

『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』

행사 대행 용역 선정 공모

과업지시서

2026. 2.

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

I 행사개요

1. 행사목적

- 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개최를 통한 체험행사·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오감만족 관광 축제 개최
- 청정도시 기장(이동마을)과 안심 수산물 기장 미역·다시마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. 행사내용

- 행 사 명: 제16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
- 기 간: 2026. 4. 17.(금) ~ 4. 19.(일) / 3일간
- 장 소: 기장군 일광읍 이동항 일원
- 주 죄: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
- 행사내용
 - 공연프로그램: 개막행사, 축하공연 등
 - 경연프로그램: 미역다시마요리대회 등
 - 체험프로그램: 미역다시마 쿠킹 클래스, 폐로프활용프로그램 등
 - 판매·먹거리: 미역다시마 직판장, 축제 먹거리장터 등

II 과업개요

- 과 업 명: 「제13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」 행사 대행 용역
- 과업기간: 착수일 ~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* 결과보고, 정산 완료시까지
- 발 주 처: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
- 사 업 비: 금87,000,000원(부가가치세, 대행수수료 포함)
-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
- 내 용: 행사 기획·홍보·행사장 조성(철거)·안전관리 전반

III 과업내용

1. 기본사항

-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의 목적, 취지,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.

2. 추진방향

- 개최지인 이동형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문화와 연계 발전된 프로그램 구성
- 특산물 “미역·다시마”를 특화한 핵심프로그램 육성
- 정형화된 먹거리 축제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,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
- 예산 범위 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계적 홍보전략 추진
- 현장 대응 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축제 추진

3. 과업 세부내용

구 분	과업내용	필수사항
예산계획	◦ 행사장 조성, 프로그램 운영 등 각 부분별 예산 이내 범위에서 운영 계획 수립·제시	인력운영, 개막식, 무대 설치, 대행비, 기업이윤 등 구분 작성
기획	◦ 축제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전략 ◦ 축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	
행사장 조성	◦ 축제장 전체 컨셉 및 관광객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◦ 축제장 내·외부 구성 및 디자인 ◦ 메인무대 설치 - 무대, 음향, 조명, 영상, 특수효과 등	축제장 입구아치 1식 메인무대 1식 포토존 2식

구 분	과업내용	필수사항
프로그램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막행사 구성 및 운영 - 개막 퍼포먼스, 개막 축하공연 등 ◦ 행사를 권역(ZONE)별로 세분화(행사존, 체험존, 참여존 등) ◦ 축제 컨셉 반영 공연 프로그램 제안 ◦ 체험부스 프로그램 운영(일체) ◦ 미역다시마 요리대회 ◦ 폐로프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	개막축하공연 (사회자 1명 및 가수공연)
행사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각종 신문, 방송 등 언론을 통한 구체적 홍보 방안 제시 	
운영 및 안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종합상황실 운영(축제 및 안전관리 총괄) ◦ 행사 진행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◦ 교통관리 대책 방안 ◦ 대규모 인파 군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현장 대응 방안 수립 ◦ 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수립 ◦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◦ 자연재해 및 가상악화(우천 등)에 대한 대비책 ◦ 기타 행사 운영·진행 관련업무 등 	
후속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행사장, 부대 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 시행 ◦ 행사 운영 전반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(사진 포함) 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추진사항 상시보고, 실행계획 보고 ◦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	

1. 일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협조, 지시, 감독을 받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물자를 확보하여 행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행함
-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에 착수계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·운용하여야 하고 필요시 발주처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으며,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전담인력 교체 요구 시 이에 즉각 응해야 함
-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.
- 발주처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,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 내용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,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정, 보완, 변경할 수 있음
- 발주처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과업추진 시 반드시 추가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(기타 행사 운영·진행 관련업무 등)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음
-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설치, 운반 및 철거 등 작업진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- 폭우 등 악천후나 우천을 대비한 행사 운영 계획을 포함함

2. 기간의 조정

-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함

3. 보안의무

-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모든 자료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,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

4. 안전관리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재난관리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
- 지자체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안전관리계획서 심의 결과 보완 사항 발생 시 성실히 시정하여야 함
- 행사 준비, 진행, 철거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
-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은 관람객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·설치하여야 함

5. 사고의 책임

-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(민·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)
-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가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6. 보험

-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- 보험 가입 시,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

7. 시설물 원상복구

- 본 행사가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고,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 부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함

8. 용역 계약의 해지

-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.
 -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
 - 과업내용이 과업 목적 및 기본방향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-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
 -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
 - 과업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
 -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- 국가 비상상태 및 천재지변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
 -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가 결정된 경우
 -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

9. 천재지변, 감염병 관련 조치

- 천재지변,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상황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발발 또는 확산, 감염병의 장기화 또는

종식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지침, 시민 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정상적인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사 취소 또는 변경, 행사규모 축소 등을 결정할 수 있음

-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축제 취소 추진 시, 계약 이후 시점부터 축제 취소 시점까지 프로그램 기획, 유치, 장비 임차 등에 소요된 기 지출 사업비에 대한 정산 추진 후 사업을 종료한다. 단, 항목별로 지출된 실비용만 지급하며,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(영수증, 계좌이체 등)가 증빙될 때 적용한다(공인회계사의 회계 원가검사 必). 또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과업중단,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등을 협의하여 처리한다.

10. 기타

- 과업 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함
- 본 과업의 내용은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써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 시 수정될 수 있으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
V | 추진사항 보고 · 성과품 납품

1. 착수계 제출
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, 과업수행자명단,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세부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

2. 중간보고

- 과업수행자는 행사 준비 및 실행 상황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시에 보고하여야 하며, 과업 진행과 관련한 사항 또한 수시 협의하여야 함

3. 결과 보고서

-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 영상물과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하며, 기획 단계부터 행사 운영 결과까지를 총괄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4. 성과품 및 납품수량

구 분	형 태	수 량	비 고
결과 보고서	책 자	3부	책자 및 USB 등 성과품 표지 및 개별 장면마다 행사명, 날짜 등 명기 (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)
	USB	2개	
사진	앨 범	2권 기록영상을 데이터파일 별도	